

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 교육감

1994. 1. 27.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교육 사회 위원회

○ 제출일자 : 1994년 1월 19일

○ 회부일자 : 1994년 1월 19일

3. 제안 이유

○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액 및 특수교육 진흥비의 사업
종료(실적) 보고방법을 개선하여 사학의 자율성 신장, 재정에
관한 책임성 확보,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, 이와 관련
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4. 주요 골자

○ 재정결함액의 사업종료(실적) 보고방법 개선

- 현행

기준재정수입액(세입) 및 기준재정수요액(세출)을 산출하여
부족분을 전액 지원하고 회계년도 말 집행액 전액에 대한
사업종료(실적)보고를 받음

- 개선

기준재정수입액 및 기준재정수요액(세출)을 산출하여 부족분을
전액 지원하고, 회계년도 말 사업종료(실적)보고시 학교의
재정수요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부분의 집행에 대하여는
보고를 생략함.

5. 검 토 의 견

○ 먼저 관계법령에 대해 말씀드리면

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

특수교육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 교육기관에 대하여 운영비, 시설비, 실험실습비, 직업보도비 및 교원의 봉급과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.

○ 충청북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바, 상위법인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에 맞지 않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보조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 한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됨.

○ 한편 신설된 제8조 제2항에서

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기준재정수입액(세입) 및 기준재정수요액(세출)을 산출하여 부족분을 전액 지원하되, 회계년도말 집행현액 전액에 대한 사업종료(실적) 보고를 받던것을, 학교의 재정수요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부분의 집행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한것은, 자율화시책에 부응하여 작은부분인 운영비에 대해서 부터라도 사학의 자율성 신장은 물론 재정에 관한 책임성 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,

- 회계년도 말 사업종료실적보고시 운영비 부분의 집행에 대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게되면 운영비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확실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.

6.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: 별 첨